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90100225
최초 등록일	2009.05.15
최종 등록일	2023.12.13

아트&하트 정보공개서

[(주)아트앤하트글로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아트앤하트글로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6 길 107, 3 층 (능동, 메디캠빌딩)

TEL: 1644-3669 / FAX: 02-446-4340

[가맹사업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내·외국 기업 여부
4. 인수·합병 여부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6. 가맹본부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8.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본부의 연혁
3. 가맹본부의 업종
4. 바로 전 3 개년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바로 전 3 개년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아트&하트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 현황
10. 바로 전 사업연도 광고·판촉 지출내역
11. 가맹금 예치기관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10.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준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기준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정 보 공 개 사 항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가맹사업((주)아트앤하트글로벌의 “아트&하트”)과 관련하여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당사와 아트&하트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주)아트앤하트 글로벌	아트&하트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6 길 107, 3 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2014.6.20	2014.6.20	심연섭	02-553-4302	02-446-4340
	법인등록번호	110111-5445104	사업자등록번호	261-81-13787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명칭(이름)	상호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주)아트앤하트글로벌	(주)아트앤하트글로벌	아트앤하트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6 길 107 (능동, 메디캠빌딩)
특수관계인 (임원)	심연섭(사내이사)		대표자	대표번호
	이동영(사내이사)		심연섭	1644-3669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나 회사를 말합니다.

3. 내·외국기업 여부

당사는 내국 기업으로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4. 인수·합병 여부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아트&하트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별첨 1 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재무사항

당사의 직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2 및 별첨 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 년	1,541,156	801,720	739,436	1,654,475	361,223	285,189
2022 년	5,667,148	4,261,807	1,405,341	2,540,325	813,952	665,905
2023 년	6,719,755	4,722,018	1,997,737	2,672,383	779,439	594,595

2) 바로 전 3 개년도 가맹사업 매출 현황

당사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직위	개인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심연섭	대표이사	2014.06. ~ 현재	(주)아트앤하트글로벌 대표	경영
	이동영	사내이사	2023.01. ~ 현재	(주)아트앤하트글로벌 이사	연구개발

8.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 년 12 월 31 일	2	0	11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아트&하트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아트&하트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아래와 별첨 1 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신청여부	출원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아트&하트	상표 및 상호	2006.5.27	제 41- 0132689 호	(주)아트앤하트글로벌 (이동영)	2026.5.29

아트&하트

ART&HEART	상표 및 상호	2006.5.27	제 41- 0132688 호	(주)아트앤하트글로벌 (이동영)	2026.5.29
-----------	------------	-----------	--------------------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아트&하트의 가맹사업 최초 시작일은 2006 년 7 월 22 일입니다. 당사가 인수하여 시작한 시작일은 2015 년 7 월 20 일입니다.

2. 아트&하트의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마음과그림	아트&하트	이 동 영	2006.07~2013.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82 길 11 501(대치동,도원빌딩 5 층)
(주)마음과교육 (법인명 변경)	아트&하트	함 광 선	2013.03~2013.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82 길 11 501(대치동,도원빌딩 5 층)
(주)마음과교육	아트&하트	이 동 영	2013.11~2014.3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116 제일빌딩 3 층
(주)마음과교육	아트&하트	이 동 영	2014.4~2015.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6 길 107, 3 층(능동, 메디캠빌딩)
(주)아트앤하트글로벌	아트&하트	심 연 섭	2015.7~2016.3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01,406 호(논현동, 구연빌딩)
(주)아트앤하트글로벌	아트&하트	심 연 섭	2016.3~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6 길 107, 3 층(능동, 메디캠빌딩)

3. 아트&하트 업종

영업표지	업종	
아트&하트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아트&하트

	기타교육	미술교육
--	------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아트&하트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아트&하트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구 분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94	394	0	458	458	0	462	462	0
서울	55	55	0	55	55	0	56	56	0
인천	21	21	0	26	26	0	30	30	0
부산	21	21	0	28	28	0	30	30	0
대구	19	19	0	25	25	0	25	25	0
광주	4	4	0	6	6	0	6	6	0
대전	7	7	0	8	8	0	5	5	0
울산	11	11	0	12	12	0	12	12	0
세종	2	2	0	6	6	0	7	7	0
경기	134	134	0	156	156	0	153	153	0
강원	10	10	0	9	9	0	12	12	0
충북	11	11	0	14	14	0	10	10	0
충남	14	14	0	13	13	0	13	13	0
전북	2	2	0	4	4	0	4	4	0
전남	4	4	0	4	4	0	5	5	0
경북	25	25	0	28	28	0	27	27	0
경남	41	41	0	45	45	0	45	45	0
제주	2	2	0	3	3	0	4	4	0
해외	11	11	0	16	16	0	18	18	0

5. 바로 전 3개년도 말 아트&하트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아트&하트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 년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 변경한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년	348	86	38	2	10	394

아트&하트

2022 년	394	99	27	8	4	458
2023 년	458	61	50	7	8	462

6. 아트&하트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아트&하트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아트&하트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연간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 년 말 가맹점수	2022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출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² 당	상한	면적 3.3m² 당	하한	면적 3.3m² 당	
전체	462	83,629	5,792	491,920	28,600	11,440	1,376	346
서울	56	77,499	6,709	491,920	19,728	18,460	1,456	48
인천	30	89,842	5,314	214,240	14,148	18,460	2,882	21
부산	30	67,459	5,223	151,970	22,458	16,510	1,729	24
대구	25	68,562	4,369	162,890	12,188	11,440	1,827	20
광주	6	5곳 미만						3
대전	5	5곳 미만						4
울산	12	97,088	5,394	160,680	9,533	16,510	1,376	6
세종	7	96,980	7,096	194,610	28,600	32,110	3,153	6
경기	153	84,305	5,901	283,790	25,545	15,990	1,842	116
강원	12	56,654	5,221	133,900	9,668	15,340	2,574	10
충북	10	93,838	6,585	133,900	27,333	45,370	2,750	6
충남	13	108,550	7,245	192,660	23,303	41,730	5,649	11
전북	4	5곳 미만						4
전남	5	5곳 미만						4
경북	27	97,311	5,046	245,960	13,550	27,040	1,681	22
경남	45	95,759	6,231	248,170	22,880	22,100	2,113	38
제주	4	5곳 미만						3
해외	18	해외 가맹점은 국가별로 모두 5곳 미만이고, 매출확인이 불가함						0

-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홈페이지에 등록한 원생 수를 기초로 하였고, 수강료는 지역마다 차등이 있기에 평균 수강료로 연평균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 6 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 개월 미만 또는 미영업 116 개 가맹점 매출액은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462 개가 아닌 실제 346 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당사는 타 미술교육 브랜드와는 달리 개인별 교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매출액은 본사에서 예상되는 평균매출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매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 연평균매출액= 원생 수 X (평균 교육비 + 평균 재료비)입니다.

[매출액 및 수익액은 가맹점 사업자 별로 지역상황, 점주의 노력 정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기준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매출 및 미래 수입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아트&하트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년	462	1,613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포함) 현황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 강동구	서울 강동구지사	경기 구리시 인창동 원일아파트 104-806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진영	010-3424-3688		9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0/03/18~	○	○	X
서울 양천구	서울 양천구지사	서울시 양천구 신정 7 동 323-32 로얄프라자 403 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유주영	010-4173-5235		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아트&하트

	2011/07/09~	○	○	X
경기 성남 중원구 수정구	경기성남 중원구,수정구지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 2 동 2500 번지 래미안아파트 10-10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강민아	010-6395-6993		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0/03/22~	○	○	X
경기 화성시	경기 화성시지사	경기 화성시 능동 푸른마을포스코더샵아파트 909 동 101 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김미애	010-5045-4331		2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2/09/13~	○	○	X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지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쌍용아파트 711-90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유지인	010-4114-8385		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0/07/01~	○	○	X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 수원시 영통,팔달지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쌍용아파트 711-90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유지인	010-4114-8385		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0/07/30~	○	○	X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지사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1-3 2 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조원주	010-2629-1031		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1/05/31~	○	○	X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지사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1-3 2 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조원주	010-2629-1031		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1/07/06~	○	○	X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381-13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정우진	010-4589-5546		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아트&하트

	2010/05/01~	○	○	X
경기 오산시	경기 오산평택지사	경기 오산시 금암동 516-1 센터프라자 503 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노주현	010-3460-5496		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2/05/26~	○	○	X
경기 광주,양평군	경기 광주 양평군지사	경기 광주시 경안동 124-27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문지웅	010-6255-9005		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1/09/06~	○	○	X
충남 당진 아산시	충남 아산지사	충남 당진시 거산 3 거리길 74-4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황태호	010-6217-2514		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6/03/04~	○	○	X
경남 진해시 창원시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진해시 자은동 538 8-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전준하	055-541-3332		1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09/06/03~	○	○	X
경남 거제도	경남거제지사	경남 거제시 문동동 삼오르네상스 106 동 701 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노현주	010-7209-4850		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0/12/27~	○	○	X
경남 김해시	경남 김해지사	경남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팔판마을 푸르지오 5 차상가 2 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김미옥	010-7167-7530		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0/11/16~	○	○	X
경북 구미,김천 상주, 칠곡	경북 구미,김천 상주, 칠곡	경북 구미시 송정동 푸르지오캐슬단지상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소정규	010-3524-6052		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3/07/23~	○	○	X
경북	경북 포항지사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현진에버빌 205 동 1908 호		

포항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이소영	010-9978-4571		1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1/01/13~	○	○	X	
울산 남구	울산 남구지사	울산 남구 삼산동 1531-3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송진주	010-9318-0002		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2/09/26~	○	○	X	
울산 중구	울산 중구지사	울산 중구 우정동 271-1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박은나	010-5161-8834		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3/06/01~	○	○	X	
대구시	대구지사	대구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2 단지상가 2 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양수영	016-359-2412		2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0/09/07~	○	○	X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시지사	경기 화성시 능동 푸른마을포스코더샵아파트 909 동 101 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김미애	010-5045-4331		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5/06/13~	○	○	X	
미국 뉴욕	뉴욕지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한원선	010-5506-2405		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1/06/30~	○	○	X	
울산 북구	울산 북구지사	울산 북구 연암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김미성	052-293-2057		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4/12/01~	○	○	X	

- 당사의 전국 지사 총 개수는 22 개이고, 해외 1 개 지사가 있습니다.

10.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내역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의 당사의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총 광고예산의 약 1:4 비율입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137,681	27,537	110,144	
광고	소계		137,681	27,537	110,144	
	비공개	비공개	87,293	17,459	69,834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22,185	4,437	17,748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28,203	5,641	22,562	비공개
판촉	소계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기업고객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09 (청담동)	02) 516-4600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예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직접 내방하여 기업고객부를 찾으시면 담당 직원이 자세하게 응대해 드릴 것입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 규정을 준수하므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에 대한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아트&하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총[11,000]천원(부가세 포함)의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없음	예치하지 않음	
기타비용 (인테리어, 집기류 등)	귀하가 선택 가능한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내역	금 액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학원	교습소	홈스쿨		
가입비	8,800	8,800	3,300	서비스 개시 이전 계약 해지 시(단, 입문교육 수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업프로그램 및 각종 컨텐츠가 제공되었으므 로
입문교육비 (필수)	2,200	2,200	2,200	교육 시작 전에 계약 해지 시	교육에 입소하면 반환 되지 않음
합 계	11,000	11,000	5,500		

- 최초 가맹금의 지급 기한은 계약 체결 후 24 시간 이내입니다. 단, 영업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할 경우, 가입비는 협의 하에 지급 기한을 최대 3 개월까지 보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가맹 형태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과 같이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분	학원	교습소	홈스쿨
보증금	없음	없음	없음
계약이행 보증보험	가입필수	가입필수	가입면제

- **반환조건** - 가맹계약서 상의 위배되는 내용 없을 시 반환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최초 계약기간 불이행 및 가맹계약서 상의 내용 불이행 시 반환 불가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범위	내역	금 액		
		학원	교습소	홈스쿨
예치금 대상	가입비	8,800	8,800	3,300
	입문교육비 (1인)	2,200	2,200	2,200
합 계		11,000	11,000	5,500

- 가맹금 예치 규정에 따라 위 가맹금 중 가입비와 교육비는 예치할 수 있습니다.

라. 최초 가맹금 외 그 밖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아트&하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²당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개별선정	14,500~ 24,100				33m²(10 평) 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 공사)	개별선정	하한 11,000 상한 16,500	하한 333 상한 500	계약금 내지 일부 금액 공사 시작 전 / 완료 후 완납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기본 냉난방 포함
간판	본사지정	1,500~2,000		물품 공급 시	반품 또는 취소	간판
집기	본사지정	700~1,000		물품 공급 시	반품 또는 취소	책걸상, 수납장 등
냉난방	개별선정	1,000~3,000		물품 공급 시	반품 또는 취소	에어컨 등
지정 필수품	개별선정	300~600		물품 공급 시	반품 또는 취소	자작나무, 기본재료, 지정소품 등
기타	개별선정	0~1,000		물품 공급 시	반품 또는 취소	소모품 등 필요에 따라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간판과 책걸상 및 교구장 등 외에 필요한 비용은 귀하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의 지정 또는 제휴업체를 원할 경우, 견적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업체 선정에 관한 모든 최종결정은 귀하가 정합니다. 다만, 간판과 책걸상 및 교구장은 브랜드의 통일성을 위해 본사지정 업체를 통해 공급받아야 하고, 인테리어 업체는 검증받은 당사의 지정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개별 업체의 선택도 가능하며, 개별업체로 선정할 경우, 이에 따른 설계 및 감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또는 입문교육 입소 전	전액 환불	-

계약 체결 후 30일 이후 및 입문교육 입소 전	가맹금 총액의 30%	이미 독점지역 발생으로 당사는 기회비용을 상실했으므로 소정의 위약금 발생
입문교육 입소 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비스 개시 전	입문교육비의 100%와 나머지 잔액의 30%	기회비용 상실 및 교육서비스로 인해 소정의 위약금 발생
입문교육 입소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후 서비스 개시 전	입문교육비의 100%와 나머지 잔액의 50%	기회비용 상실 및 교육서비스와 더불어 가맹점 개원을 위한 서비스 인해 소정의 위약금 발생

바.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아트&하트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미술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자 - 입문교육 그 외 전공자 - 입문교육 및 창업스쿨	만 22 세 전문학사 이상
종업원(강사)	강사 입문교육 입소 및 수료 가능자	만 22 세 미술 및 유아교육 관련 전문학사 이상

아.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자.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홈스쿨	550 만원	20%	110 만원	330 만원	
상가형	1,100 만원	20%	220 만원	660 만원	
납부일		계약일	입문교육 입소 전	서비스개시 전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지급 대상자	금 액(단위: 천원, 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프로그램 공급 및 시스템 이용 대가	가맹 본부	385 (단, 계약준수 시 할인적용 실 납부액 330 / 별첨 4 참고)	매월 5일	후불로 반환 안됨
개점 이후 교육비	정기교육	가맹 본부	교육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비정기교육	가맹 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 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판촉물 제작	광성	11,00~1,100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 본부	가맹점사업자는 29,700 원/월 정액 (광고종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광고집행 이후 반환 안됨 단, 광고집행 전에 해지시 잔액 반환됨
점포 환경 개선 비용	간판교체, 인테리어(장비,집기 의 교체비용 제외한 실내건축공 사)	자 율 선 택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VII-1 참조
지연 이자	금전지급 의무의 지급기한 경과시 지연이자	가맹 본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강제의 거래방식으로 구입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차액가맹금)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업용 책걸상 및 교구함 세트’와 ‘간판’은 지정업체를 통해 강제 거래를 하지만 당사는 업체와 가맹점사업자를 연결하여 직접 거래하도록 할 뿐 물품에 대한 차액가맹금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수업, 원생등록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재교육비 외에는 별도의 비용 지급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갱신 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을 성실히 준수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 재교육(초심교육)비 330,000원

나. 경업금지 의무

당사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동종업종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 2)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동종업종을 모집하는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3)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이후 12개월간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동일장소에서 당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종업종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그 밖의 부담 비용: 그 밖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라.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최초 가맹계약 2년 이내에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아트&하트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개점 전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공개서 상의 가맹비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아트&하트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아트&하트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 2)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아트&하트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책걸상과 간판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품목은 가맹사업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물품이니 당사가 명시한 규격과 재질 기준에 부합한 상품을 당사를 통해 거래하시면 됩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아트&하트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는 어떠한 특수관계인도 존재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위 상품 외에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아트&하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아트&하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 고
-----	------------	---------	-----

미술로 집중력 쑥쑥 교재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서면 시정 경고	
신기한 드로잉 스쿨 교재		2 회 위반: 서면 시정 경고	
어린이 드로잉 워크북		3 회 위반: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상품·서비스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 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상품·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당사가 지정한 상품·서비스를 판매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교육명	권장 수강료	가격 통보	비고
주 1 회 수업	월 9~12 만원	개별 협의	2022 년 기준
주 2 회 수업	월 13~18 만원	개별 협의	2022 년 기준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유아, 초등 미술교육사업	아트앤하트	없음

-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외에 지역에는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혹여 귀하의 영업지역과 가깝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지역을 귀하의 영업지역으로 추가하고 싶다면 타 가맹점에 우선하여 당사와 추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설정 기준 및 방법
홈스쿨	교육원 주소지 인근 1,000 세대 미만 지역상권에 따른 지도 표기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교습소, 학원	교육원 주소지 인근 3,000 세대 미만 지역상권에 따른 지도 표기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와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	--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아트&하트’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아트&하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가.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아트&하트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 일로부터 1 년입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90 ~ D-3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90 ~ D-3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90 ~ D-3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90 ~ D-3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3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1년간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재교육비를 지급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재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	7조 2항 각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인근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브랜드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두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1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 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제 3 조 2 항 및 3 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 4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제 4 조 4 항
가맹계약 갱신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 8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월회비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 회 이상 연체한 경우	제 15 조
가맹점사업자가 연 정기 필수 교육을 미참석한 경우	제 16 조 2 항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17 조 1 항 및 2 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 18 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 개월에 걸쳐 3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 20 조 1 항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제 21 조 2 항~4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 21 조 6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제 22 조 9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 23 조
직원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 26 조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의 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 27 조 2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 27 조 6 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제 28 조

25 조 각호
및 31 조
1 항 1 호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 29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제 30 조 2 항~5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제 30 조 7 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 35 조 1 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제 25 조 23 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 31 조 1 항 2 호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1조 4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5)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 개월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상호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90 일에서 3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협의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수인이 가맹본부에 교육비 및 컨설팅 비용납입 → 양도·양수계약체결(5일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 ①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지만 양수인은 양수에 따른 개점 전 교육훈련 및 개점 컨설팅 비용(양도 시점 표준가맹비의 5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양도인은 양도 후 영업거점지역 내에서 자신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 승인을 취득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행사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교육비 지급 후 교육수료
대리 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범위 내의 권리의무	

라. 영업장의 이전

귀하가 계약기간 중 당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영업지역 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지만 영업지역 외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해야 할 경우, 초기 개점과 동일한 교육훈련 및 개점 컨설팅이 발생하므로 이전 시점 표준가맹비의 50%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가. 경업금지 범위

당사는 계약 기간 동안 또는 계약 해지 후 1년간 귀하가 아트&하트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 허가 절차	비고
유아동에게 미술을 교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경영지원팀 (02-553-4302)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아트&하트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오후 10:00~ 오후 07:00	주 최소 2회 이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활동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1) 당사는 아트&하트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회원모집광고 +가맹점모집광고	월정액으로 매월 150만 원을 부담	월정액으로 매월 29,700 원을 부담함.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공고	광고계획 및 예산이 변경될 때에는 전체 가맹점의 과반수 이상 동의 시 전체 적용
판촉행사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1/5 부담	증정상품 출하가 4/5를 총 가맹점 비 율대로 부담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 동의 시 전체 적용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 및 디지털 파일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고, 이미지나 영상 등 디지털 매체를 촬영, 카피, 캡처를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타용하여 본 가맹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7 조(비밀유지 의무), 제 18 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 일천만원(W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 33조 1항
당사는 귀하의 사업을 위하여 가맹본부로서의 각종 노하우를 전수하였으므로 귀하가 계약 후 최초 1년 내 중도해지 시 당사에게 위약벌로 1년치 월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33조 2항
귀하가 제 31 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해지·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제 33조 3항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 일천만원 (₩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일 금 삼십만원 (₩300,000)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33조 4항
신규원생을 본사 시스템에 등록하여 당사에게 입금해야 하는 본사등록비를 미 입금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그 동안 미 입금한 총액의 10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33조 5항
귀하에게 교육을 받던 수강생은 당사와 공동의 소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및 종료 이후 당사의 동종업계에 일방적으로 넘길 경우, 위약벌로 금 일천만원 (₩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33조 6항
제 1 항 내지 제 5 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3조 7항
귀하가 22 조 1 항의 내용을 위반하여 본부의 승인 없이 자점매입할 경우 본 계약 31 조 1 항에 해당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 오백만원 (₩5,000,000)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33조 8항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월 로열티, 광고비 등을 1 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가맹점으로서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제 33조 9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 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3조 10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30 일)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	-----	------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개설지원서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 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가맹계약 체결 14 일 전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1 차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가맹계약 1 일 전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및 초도 물품 주문	- 해당사항없음	D-29(1 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 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 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 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오픈전 정기 입문교육일(2 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특강교육 실시	- 오픈 후 특강교육 실시	오픈 후 2 개월이내(3 일)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 - 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1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의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계약이행여부, 표준화, 시장조사, 판촉, 기타 문제, 상품,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1. 당사는 매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관리자, 배송담당자 등을 파견하여 가맹점의 경영지도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메일 또는 당사 전화로 경영지도를 문의하면 당사 해당 담당자나 연구원이 경영개선방안 자문을 드립니다.	무료	문의: 경영지원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로열티 지원	해당기간 월 로열티 면제	최초 신규 가맹 및 오픈한 경우	오픈일로부터 2 개월	총 약 66 만원
유지보수 지원 (신규원장)	초기정착 부진 가맹점을 위한 경영지원	오픈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손익분기점 미달성한 경우	손익분기점 달성 시까지	경영 컨설팅 제공 홍보물품 50% 할인 등
유지보수 지원 (기존원장)	매출 감소로 인한 위기 가맹점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 개월간 월 순수익이 100 만원 이하인 경우	월 순수익이 150 만원 이상 회복시까지	경영 컨설팅 제공 홍보물품 50% 할인 등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아트&하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정기교육은 필수교육으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교육명	비용	최소시간	비고
개정 전 교육·훈련	입문 교육	220 만원	35 시간	필수
개정 후 교육·훈련	정기교육	월례세미나 - 없음	150 분	필수
		연례세미나 - 5~10 만원	6 시간	필수
		초심교육 - 33 만원	15 시간	필수
	비정기교육	기타 교육 - 10~30 만원	5 시간	선택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당사자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정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정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

별첨 1(영업표지 및 지식재산권)

1. 일반 현황

브랜드 명	상호	서비스표	이미지
아트&하트	아트&하트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출원번호 4120050012648	

2. 기타 영업표지 및 소개



3. 사용허락 지식재산권

구분	건본이미지	권리 범위	등록 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만료일
상표	아트&하트	가맹점 상호로 사용	2006.5.29	제 41-0132689 호	(주)아트앤하트 글로벌	2026 5.29
	ART&HEART		2006.5.29	제 41-0132688 호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별첨 2(재무상태표)

2023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1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손익계산서)

2023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1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 유형에 따른 가맹점 개설비용 및 조건

항목	학원/교습소	홈스쿨	비 고
최초 가맹금	11,000,000 원	5,500,000 원	VAT 포함
월 로열티	정가 385,000원 / 할인가 330,000원 (계약 준수 및 기한 내 정상납부 시 할인 적용)		VAT 포함 학원/교습소/홈스쿨 월 로열티 동일
보 증 금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		보증보험료는 별도
본사지원 초도물품	* 공통사항 : 아트&하트 브랜드 및 콘텐츠 사용료 / 인테리어 컨설팅 / 수강료 컨설팅 / 아동모집 홍보컨설팅 / 입문교육(5 일) / 현판 / 명함 200 매 / 가이드북 10 권 / 3 단 리플렛 50 장 어린이를 위한 드로잉북 6종 각 1권 / 원장용 앞치마 1개 아동용 앞치마 토시 1세트 / 전단 2,000부 / 예코백 1개		